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의 전자거래 활성화 지원 근거 신설 등〉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67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의 전자거래 활성화 지원 근거 신설 등 ..	2
2. 화훼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6.
3. 회 부 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임.

무엇보다 화훼류 가격은 도매시장·공판장에서 도매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를 함으로써 소매인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의 전자거래 활성화 지원 근거 신설 등

개정안 제10조의2는 ①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의 투명하고 간소화된 거래를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화훼 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 화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의2제1항~제3항),

② 화훼도매시장·화훼공판장은 도·소매업자에 대한 판매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4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거래의 선진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의 현금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간소한 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된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화훼 전자거래소(화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화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 화훼의 품목·원산지·가격 및 바코드 등 전자인식표의 표시 및 관리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5. 화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화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 방법 등 화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은 유통질서 유지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① ‘전자거래 활성화 지원근거 신설’ 관련

화훼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의2¹⁾에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촉진 규정이 존재함. 따라서 개별법에 화훼 전자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1)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관상용 위주의 화훼 소비 특성상 전자거래소 이용 활성화에 제약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② ‘도소매 판매분리 운영 근거 신설’ 관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중도매인의 경매 후 유통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화훼 품목만 별도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공정거래위원회

① ‘도소매 판매분리 운영 근거 신설’ 관련

도매업자의 소매 판매를 법률로 제한할 경우 화훼시장의 경쟁이 약화되고 도매업자의 판매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선택권 축소 및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후생 저하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

① ‘도소매 판매분리 운영 근거 신설’ 관련

수산, 과일 등 타 품목과 달리 화훼에 한해 도·소매업자와 소비자 직접 판매를 구분 운영하는 것은 중도매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 저해와 타 민간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화훼

소비 확대를 바라는 생산자 입장에서조차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도소매 판매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도·소매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사)한국화원협회²⁾ 및 (사)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³⁾

① ‘도소매 판매분리 운영 근거 신설’ 관련

도·소매업자의 소비자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화훼산업 발전에 필요한 조치이므로,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검토의견

우리나라의 화훼는 공영시장과 민간시장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음. 전체 화훼 생산액의 약 47.3%(‘22년 기준)는 공영시장(7개 화훼공판장), 52.7%는 민간시장(강남고속터미널 화훼상가 등 화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소매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2) 화원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국민정서 함양과 문화생활의 기여 등 화훼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

3) 화훼디자인 등에 관심 있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꽃 문화 예술의 연구를 통해 국내외 친선 도모 및 꽃 문화 예술 보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9년 설립

※ 회원 대부분 화원을 운영하면서 플로리스트(Florist)로 활동

＜화훼공판장 현황＞

구분	지역	취급품목	운영주체	중도매인
양재화훼공판장	서울 양재동	절화, 난, 관엽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94명
부산화훼공판장	부산 엄궁동	절화, 난, 관엽	농협중앙회	88명
부산경남화훼공판장	부산 강동동	절화, 난, 관엽	부경원예농협	92명
영남화훼공판장	경남 김해시	절화	영남화훼농협	40명
광주원예농협화훼공판장	광주 북구	절화, 난, 관엽	광주원예농협	47명
고양화훼공판장	경기 고양시	난	한국화훼농협	70명
음성화훼공판장	충북 음성군	난, 관엽		105명
합 계				836명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4. 10. 25.

＜화훼 총생산액 대비 공판장 거래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생산액	850,995	821,471	760,409	736,812	704,692	633,207	560,238	565,788	538,892	517,445	526,900	538,240	565,130
총거래액	230,925	204,953	211,506	206,003	204,398	205,241	208,288	200,048	213,005	217,540	196,946	243,781	267,095
총거래비율	27.1	24.9	27.8	28.0	29.0	32.4	37.2	35.4	39.5	42.0	37.4	45.3	47.3
절화류총생산	297,561	286,281	259,076	262,933	264,339	217,409	177,350	183,264	178,647	178,145	169,922	174,021	183,776
절화류	124,269	113,623	118,440	112,405	110,718	115,320	119,014	115,327	122,455	125,701	113,278	146,769	169,460
절화거래비율	41.8	39.7	45.7	42.8	41.9	53.0	67.1	62.9	68.5	70.6	66.7	84.3	92.2
분화류총생산	294,164	276,573	264,845	250,551	226,733	221,491	194,678	192,796	196,909	201,449	193,545	207,679	220,831
분화류	106,656	91,330	93,056	93,598	92,254	89,920	89,274	84,721	90,550	91,839	83,668	97,012	97,635
분화거래비율	36.3	33.0	35.1	37.4	40.7	40.6	45.9	43.9	46.0	45.6	43.2	46.7	44.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2 화훼재배현황」, 2023. 8.

현재 화훼거래는 도매시장⁴⁾ 없이 모두 화훼공판장⁵⁾으로 개설 운영

4) 화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화훼류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함.

5) 화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등의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법인이 화훼를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

중이고, 공판장 운영 및 거래 방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공판장 운영 관련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자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4. 10. 25.

그런데, 화훼공판장의 도매업자(중도매인)는 소매업자(소매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와 강한 자본력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도매업자(중도매인)가 소매업자(소매상)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화훼류를 판매할 수 있어 소매업자가 불리한 입장에서 도매업자와 경쟁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

<화훼공판장 거래 절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4. 10. 25.

개정안은 ①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② 화훼 도매시장·공판장 내 도매 판매와 소매 판매를 장소적·시간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현재 화훼‘도매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화훼‘공판장(7개)’만이 존재하는바, 개정안에 따른 규율의 대상이 되는 도매업자는 화훼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은 화훼 거래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화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화훼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⁶⁾하며, 도매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여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규정하는 안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이미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제70조의2⁷⁾에서 개

6) aT양재공판장은 비대면거래 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22년부터 온라인경매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정안와 유사한 취지로 농수산물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농수산물의 범위에 화훼를 포함⁸⁾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는 화훼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도 보임.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도 화훼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별도 입법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농수산물 전자거래소 기능별 내용>

기 능	내 용
전자거래시스템	○ 온라인 거래, 경매 등이 가능토록 구축된 홈페이지 - 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 보안/인증시스템 및 배송 연계 등 기능필요 * 운영사례 : 양재화훼공판장에서 2021년부터 ‘전자거래소’ 운영

-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기 능	내 용
물류센터	○거래대상 상품의 판매·배송전 보관 장소 - 화훼류의 경우, 중도매인이 대부분 개별 사무공간과 저온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업체별 개별 택배를 이용하고 있어 별도 물류창고는 불필요
판매·구매자 등록·관리	○온라인 판매, 결제, 배송, 정보제공 등을 위해 판매자의 정보와 구매자 회원가입·관리 필요(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인프라)
바코드 등 전자인식 표시	○거래상품의 전자적 거래(상품 및 업체 정보제공, 거래, 배송 추적, 소비자 보호 등)를 위해 가격, 원산지 등 상품의 세부사항 전자화 필요(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인프라)
대금결제 정산소	○생산자(출하시 정산)와 도매인(판매후 정산)간 상이한 정산시기에 따른 선지급·후정산 지원방식으로 정산소 운영을 위한 인력, 조직 및 결제자금 지원 필요
유통정보서비스 제공	○거래 신뢰제고,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생산·유통·소비 및 기업·상품 정보 제공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4. 10. 25.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화훼 전자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65억 9,8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둘째,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규정하는 안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중도매인과 소매상(꽃집) 및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자거래 관련 규정은 출하자가 화훼공판장에 위탁하여 화훼공판장이 중도매인에게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지불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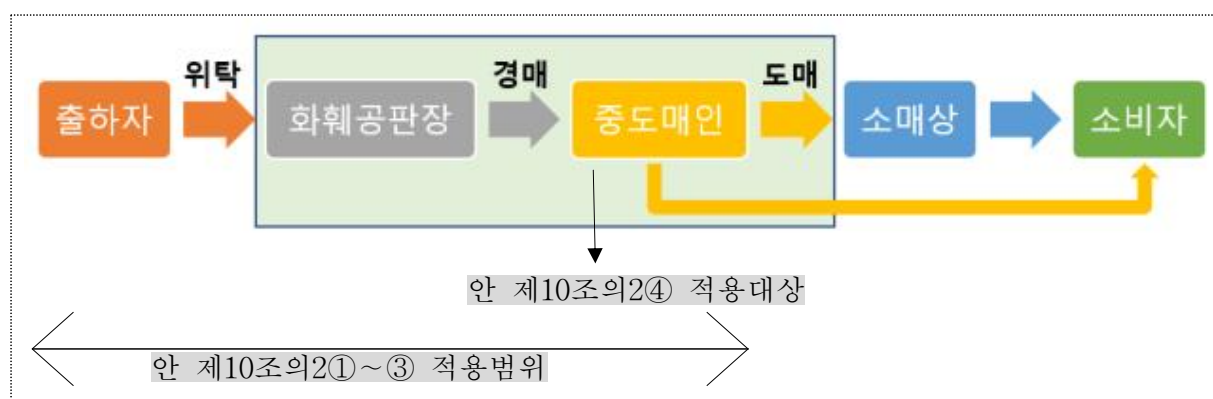
현재 화훼공판장(도매시장)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 대금은 정산소를

통해 계좌이체로 이루어짐.

그런데 화훼 도소매업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의무가 없어, 중도매인과 소매상(꽃집)·소비자 간에는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로 양재동 화훼공판장 내 중도매인 96명 중 55명 만이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이와 같은 현금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화훼공판장 거래 절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4. 10. 25.

셋째, 화훼 도매시장·공판장 내 도매업자가 도매 판매와 소매 판매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형평성, 소비자 권익 및 화훼류 특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화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 등 다른 유통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상황은 다른 농수산물

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남.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화훼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화훼 등 일반적인 농수산물에 대한 도매업자의 경매 후 유통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화훼 유통에 종사하는 도매업자에게만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도매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시간적⁹⁾·공간적으로 제한할 경우 소비자는 원하는 시간 및 공간에서 화훼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화훼의 선택권에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매업자의 판매비용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아울러, 화훼류는 일반 농산물과 달리 거래 품목이 매우 다양하여 한 품목에 대한 대량 도매가 아닌 여러 품목에 대해 소량으로 거래가 되는 특성이 있어 도소매 구분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 화훼품목 증가에 따라 화원 등에서도 다품목 소량 구매를 하고 있으며, 개별 소비자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대량 구매를 하고 있다는 점¹⁰⁾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양재꽃시장 도·소매 이용시간 분리 운영 사항(자율적 도·소매 분리시행, '22.4월~현재)
- (소매상) 00:00~10:00 / (일반고객) 10:00~12:00

10) 양재동 화훼공판장 출하 품목 : ('00) 329품목(절화 124, 관엽 185, 난 20)
('23) 578품목(절화 240, 관엽 307, 난 31)

2. 화훼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 제11조의2는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종합계획 수립, 도매시장·공판장에서의 경매·도매·유통·소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화훼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1조의2(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 ①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2. 화훼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하여 화훼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u> <u>3. 화훼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경매·도매·유통·소비 등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4. 화훼장식업 종사자 육성 및 화훼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5. 제12조와 제13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훼산업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수렴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위원회 설치 불필요함.

2) 행정안전부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한국절화협회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농식품부 고유업무 영역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기 설치된 위원회와 화훼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율할 수 있으며, 별도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정부 정책 수립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에 따른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화훼 산업의 이해관계 조정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¹¹⁾에서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¹²⁾ 및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¹³⁾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화훼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중 ‘유통소비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음.

<농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 소속·성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자문위원회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50명 이내의 위원
- 자문사항: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의 장·단기 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장·단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농식품부 정책자문위 중 ‘유통소비정책’ 분과위원회 개요>

- 구성: 김병률 분과위원장(KREI 선임연구위원) 등 14명으로 구성
 - ※ 연구계 3명, 학계 6명, 관련업계 4명, 유통소비정책관으로 구성
- 자문분야: 농식품 유통 및 소비 정책관련 기본계획, 장·단기 계획,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 사항 등에 대한 자문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4. 11. 4.

문 의 처

02)6788-5416
